학회지『동남아시아연구』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본학회)에서 간행하는『동남아시아연구』(영문명 The Southeast Asian Review,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
3)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4)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지역별, 학문별 분야의 안배를 고려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이 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2인 이상 같은 대학에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의 판정,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편집규정)

1) 학회지는 매년 1호(2월 28일), 2호(5월 31일), 3호(8월 31일), 4호(11월 30일) 연 4회에 걸쳐 발간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로 국한하며, 연구논문, 번역, 서평, 연구단편(research note) 등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타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게재 가능하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1호 심사대상 논문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3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4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5)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이 포함된 원고를 전자메일이나 디스켓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7)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번역, 연구단편 포함)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8) 게재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기입하여야 한다.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기입한다.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가 한국동남아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논문 게재 이전에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제출된 논문은 다음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단계: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즉시 제출된 논문과 논문게재 신청서가 학회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

사평가서(별지서식 2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4단계: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결과 판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1)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가(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을 내린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			판 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A	A	B	수정 없이 게재

A	A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B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B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C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C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A	D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

3)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의2(편집위원의 투고)

1)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제5조와 제6조에 정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논문 게재료)

1)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2) 기본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에 10만원을 추가하여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집 논문의 경우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 및 미취업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한다.
4) 만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원고 매수가 20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된 매 10매마다 5만 원씩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논문의 게재는 학회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7. 8.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변경내용은 학회지 제17권 2호 (2007년 8월 31일 발간)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8)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

제 6조(심사결과 판정)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동남아시아연구』발간일정

	게재신청마감	원고제출마감	학회지발간
각권 제1호	12월 1일	12월 31일	2월 28일
각권 제2호	3월 1일	3월 31일	5월 31일
각권 제3호	6월 1일	6월 30일	8월 31일
각권 제4호	9월 1일	9월 30일	11월 30일